

Daelim PP UH625J

호모폴리머



제품 설명

Daelim PP UH625J는 LyondellBasell사가 개발한 Spheripol 공법으로 울산피피에서 생산한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입니다. 이 제품은 고속 가공에 적합한 제품으로 일반용의 이축연신 필름(BOPP)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 Daelim PP UH625J는 미국 식품의약품국(FDA)의 식품포장 규격인 21 CFR 177.1520 규정을 만족하고 있습니다.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성   | 우수한 가공성 및 연신성/우수한 강성/우수한 광학적 특성 |
| 시장   | Flexible Packaging              |
| 주요용도 | 이축 연신 필름/ 일반용 필름                |

| ASTM Data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물성                   | 측정치    | 단위       | 측정방법        |
| 용융지수 (230°C, 2.16kg) | 3      | g/10 min | ASTM D1238L |
| 밀도                   | 0.9    | g/cm3    | ASTM D1505  |
| 굴곡탄성률                | 15,000 | kg/cm2   | ASTM D790   |
| 인장강도(항복점)            | 360    | kg/cm2   | ASTM D638   |
| 신율(항복점)              | 12     | %        | ASTM D638   |
| 아이조드 충격강도 (23°C)     | 4      | kgfcm/cm | ASTM D256   |
| 록크웰경도 (R-Scale)      | 95     | R-Scale  | ASTM D785   |
| 연화점                  | 146    | °C       | ASTM D1525  |
| 열변형온도 (0.46 N/mm²)   | 105    | °C       | ASTM D648   |

- 1) 위의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, 제품 사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.
- 2) 울산피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사용 설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동 제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사용자가 동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제한 사항 및 사용 설명을 준수하지 않거나, 해당 제품을 특정 범주의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각각의 특정 용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시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일체의 손해 또는 손해는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이며,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.
- 3)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울산피피는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(판매적합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일체의 보증 포함)도 하지 않습니다.
- 4) 본 제품(들)의 사용은 아래의 경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.
- i.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3,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4 및/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3 의료 기기;
  - ii. 영구적 체내 이식을 수반하는 용도;
  - iii. 생명연장을 위한 의학적 용도; 또는
  - iv. 납, 석면 또는 메틸삼차부틸에테르 (MTBE) 관련 적용
- 사용자는 본 제품을 위 범주에 사용함에 따른 일체의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,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.
- 5)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각각의 구체적 사용 방식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 범주에서 본 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. 단, 판매자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동 제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i.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1,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1 및/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1 의료 기기;
  - ii.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2,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2 혹은 클래스 3 및/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2 의료 기기;
  - iii. 전술한 의료 기기 중 하나의 일부 또는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필름, 겔포장 및/또는 제품 포장재;
  - iv. 활성 제약성분에 직접 닿는 포장재 및/또는 흡입, 주사, 정맥·코·안과적(눈) ·소화기 혹은 국소(피부) 투여를 위한 조제 형태;
  - v. 담배 관련 제품 및 사용;
  - vi. 전자 담배 및 유사 기기; 또는
  - vii. 원자로의 일부 또는 부품으로 간주되는 압력 파이프 또는 설비
- ※미국 식품의약품국, 캐나다 연방보건부와 유럽연합 규정에 대해 언급된 모든 내용은 그에 준하는 다른 나라의 규제 분류를 포함합니다.
- 6) 본건 책임부인고지문의 목적상 "판매자"는 울산피피 및 울산피피가 본 고지문이 적용되는 제품 판매를 위해 선임한 자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.

Trademarks

제품명에 언급된 상표는 DL 홀딩스가 소유하고 사용하며, 울산피피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입니다.